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399

발의연월일: 2022. 7. 12.

발 의 자: 구자근 · 김학용 · 박대수

박성민 · 서범수 · 이명수

이종배 · 정우택 · 정희용

태영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 음.

그런데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중소기업 관련기관·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책무를 추가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

2항).

법률 제 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추진하여야"를 "추진하고,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 단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생 략)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	2
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	
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추진하고,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
	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
	<u>o</u>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